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서 산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기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 “낙시어선업자” 라 한다)와 그 어선 및 낙시어선의 승객에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 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한다. 단,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검사된 낙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4.1~10.31) 04:00~20:00까지, 동절기(11.1~3.31) 05:00~19:00까지로한다.

제4조(운항회수) ①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낙시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1일 2회 이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1회 낙시승객을 낙시장소에 안내하여 낙시승객이 낙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차 승객 수는 1·2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낚시어선업 행위는 당일 입·출항을 하여야 하며 야영하면서 낚시어선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해상교통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충청남도 해상 및 경기도와 공동영업 구역으로 지정된 해상을 벗어난 구역
3. 서해특정 해역에서 선상 낚시행위 금지

② 낚시어선업자는 모든 지역 무인도서, 갯바위,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과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
2. 정원초과승선 금지 및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선원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
3.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선주·선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
4.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할 것

5. 다른 시·군 관할수역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령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6.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 승객들이 생산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와 휴지통을 선내에 비치할 것
7. 강풍, 풍랑, 해일, 태풍주위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도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의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하지 말 것
8. 음주상태 및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체중 미만의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5.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6.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7. 낚시어선 승객은 선내에서 음주 금지

제7조(출항 전 안전점검 및 안전속력 항행의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 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8조(낙시어선 승객의 승선자 명부 성실 작성의무) 낙시어선에 승객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의 보고)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및 충돌·좌초 기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인접시장·군수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서산시 고시 제 2013-23호. 2013.2.19.)는 폐지 한다.